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0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용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5.7.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지구, 방재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나.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의 제한대상 건축물 정비함(안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1) 각 경관지구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련시설은 세차장 및 차고의 건축을 제한함

(2)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 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및 완화요건을 개정함(안 제43조 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

- (1)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함
-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하되, 건축심의회 또는 경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음
- (3)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하되, 건축심의회 또는 경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라.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2015. 7. 30.) 이전에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2) 입법예고 (2019. 5. 16. ~ 6. 5.) 결과: 별도 첨부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조망확보와”를 “조망 확보 또는”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3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43조제1항 각 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경관지구의 세분)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u></p>	<p><u><삭 제></u></p>
<p><u>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생 략)</u></p> <p><u>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u></p> <p><u>3. (생 략)</u></p>	<p>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①---</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조망 확보 또는</u> -----</p> <p>-----</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u>제40조(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는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u></p> <p><u>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p> <p>③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1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되 용적률은 2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계경관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행	개정안
<p>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종합병원</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p> <p>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그 부분에 식수(식수)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조례 제24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 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p> <p>1. ~ 4. (생략)</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p>	<p>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p>

현행	개정안
<p><u>물저장소</u></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u>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① <u>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u></p> <p>1. <u>궁궐·성·왕릉 등 면단위지정문화재 또는 근현대 건축물·사적지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주변지역으로서 역사 또는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u></p> <p>2. <u>한옥밀집지역으로서 한옥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u></p> <p>② <u>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① <u>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43조제1항 각 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u></p> <p>② <u>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u></p>

현행	개정안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4조의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단서 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p>	<p>있다.</p> <p><삭 제></p> <p>제44조의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 ----- -----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p> <p>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p>

현행	개정안
<p>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5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4층 이하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6층 이하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6층 이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8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데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의 	<p>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외관을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경관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u></p> <p>3. <u>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u></p> <p>4. <u>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주변 경관의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u></p> <p>5. <u>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하는 경우</u></p> <p>③ <u>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형태·배치·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생략)</p> <p>② <u>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u></p>	<p>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5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삭 제></u></p>
<p><u>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u> <u>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중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u> <u>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u> <u>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u> <u>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u> <u>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u>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의 위락시설</u></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u>의 공장</u></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u>의 창고시설</u></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u>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 소는 제외한다)</u></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 <u>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 른 차고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u></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 <u>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축 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u></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 <u>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u></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 <u>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u>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 <u>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 설</u>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u>의 묘지 관련 시설</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15 273 794 376">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 data-bbox="172 488 759 591">부칙 <제5981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172 676 360 712"><신설></p>	<p data-bbox="852 488 1398 524">부칙 <제5981호, 2015. 7. 30></p> <p data-bbox="810 551 1437 65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810 676 1437 1128">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구분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44조 및 제44조의2 관련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구 안에서의 높이제한 완화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당초와 같이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높이 완화시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제44조의2 관련	송파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 제44조의2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6층 이하) 배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미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층수제한은 추가로 신설하는 조례개정사항이 아니며, 제45조(건축물의 높이)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44조의2로 이동하는 사항임 - 다만, 향후 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현재의 건축제한이 추가적인 규제로 적용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예정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관련	송00	제2015년7월30일에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와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는건 반대합니다. 혹여나 어느기업의 공장부지개발로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규정 미련을 통해 산업부지 확보비율 적용논란 해소 및 기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에 대한 권익보호 및 신뢰보호가 필요함 -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현 시점에서 과거의 부칙개정을 통해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조00	2015년 7월30일 조례개정 당시에 경과조치 사항을 포함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 지나 조치한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00	반대합니다. 재건축 규제는 공공 묶어 놓고 대기업 공장 부지는 왜 풀어 주는지요? 재건축 규제도 풀어주세요.	
	최00	1. 반대합니다. 2. 어느기업의 특혜 아닌가요? 3.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인가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관련	정00	반대합니다. 서울시내 공업부지는 대부분 큰 회사 땅일텐데 특혜 아닌가 싶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경과규정 미련을 통해 산업부지 확보비용 적용논란 해소 및 기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에 대한 권익보호 및 신뢰보호가 필요함 -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현 시점에서 과거의 부칙개정을 통해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임00	* 반대합니다. 특정 사용자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은 분양가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규제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박00	2015년7월30일에 조례개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기업의 공장부지개발로 특정집단의 이익이 커서 특혜와 많은 충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조00	서울시와 심의의원님들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개발행위의 주체와 대립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를 정하고 완화 및 강화 하는등의 행위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위한것인지 또한 그로인해 원하지 않는 소수의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지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반대합니다.	
	최00	공장부지 내 공동주택 건축의 허용비율 개정하고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관계자들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실수인지 방관인지 알고 싶지 않으나 이제와 경관규정 운운하며 공남공고를 하는 정책이 의심스럽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된 세부 경관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각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칙규정에 기 개정된 조문의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과 정성훈(02-2133-8324)